<별지 제17호> <개정 2013.9.17., 2016.7.28.>

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등록신청서

1. 상호 등

- 상호(영문 및 국문), 회사설립연월일, 목적사업 , 회사의 연혁 및 설립이후 주요변동 사항

■ 첨부서류

1-1. 정관(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) 1부

1-2. 법인등기부등본(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) 1부

2. 본점의 소재지 및 연락처

■ 첨부서류

2-1. 본점의 위치·연락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

3. 재무에 관한 사항

■ 첨부서류

3-1.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(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,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) 1부

3-2. 감사보고서등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

※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3-1.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4.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

임원수 : 명(상근: 명, 비상근: 명)

직위	성명	주민등록번호	소유주식수 (비율)	주요 경력	상근 여부	담당 업무	전문인력 여부	임원자격 적합여부

기재상의 주의

1. 등기 임원 및 집행임원 모두에 대해 기재한다.
2. 상근여부에는 상근 여부 및 등기 여부를 기재한다.
3. 임원자격은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.

■ 첨부서류

4-1.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(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) 각 1부

4-2.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

5. 직원 및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
가. 직원현황

직원수 : 명

직위	성명	주요경력	담당업무	전문인력여부

나. 전문인력현황

전문인력수 : 명(임원 : 명, 직원 : 명)

직위	성명	주민등록번호	주요경력	전문자격내용	비 고

기재상의 주의

1. 전문인력은 영 제280조제2항의 전문인력을 말한다.
2. 전문자력내용은 영 제280조제2항의 전문인력 요건의 해당여부를 기재한다.

■ 첨부서류

5-1.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(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) 및 자격 확인 서류 각 1부

6.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

가. 영업장소에 관한 사항

영업소 명칭	소재지	설치연월일	대표자	영업내용	영업소 규모 및 소유구분	직원수

기재상의 주의

1. 영업소 명칭은 본점, 지점, 그 밖의 영업소로 구분하여 기재한다.
2. 영업내용은 집합투자기구평가업무의 세부내용을 기재한다.
3. 영업소규모는 평단위로, 소유구분은 자기소유·임차·그 밖의 경우로 구분하여 기재, 임차의 경우 임대인(건물명 포함), 임차기간 기재

나. 전산설비에 관한 사항

- 전산설비 내역(설비의 사양, 사용처, 보조전산장비 등)
- 자료획득 및 가공, 처리 능력을 담보하는 물적 시설
- 정전·화재 등의 사고 발생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완설비

■ 첨부서류

6-1. 사무공간,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등의 서류 1부

7.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(집합투자기구평가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)

■ 첨부서류

7-1.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·평가·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부
7-2.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1부
7-3.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

8. 집합투자기구평가체계에 관한 사항

가. 평가대상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o 평가 대상 집합투자기구를 구체적으로 명시

예) 평가 대상 집합투자기구 : 1년 이상 운용 집합투자기구 중 수탁고가 500억원 이상인 집합투자기구

나.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분류 기준 및 유형별 기준지표에 관한 사항

다. 수익률 및 위험지표 계산에 관한 사항

라. 집합투자기구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

마. 자료제공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

o 제공 및 공시하는 평가자료의 범위,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

예) 1개월 이전 운영 내역에 대해서는 상위 10개 집합투자기구만 공시

9.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등

가. 업무처리체계

- 업무처리 관련 조직체계를 도표형식으로 표시

나. 영업행위준칙

기재상의 주의

법 제259조제1항에 따라 제정한 영업행위 준칙의 주요내용

다. 기업집단 현황

회사명	국적	사업자등록번호	지배관계	비고

기재상의 주의

1. 기업집단은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
2. 기업집단으로 분류되는 사유 및 지분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

■ 첨부서류

9-1. 영업행위준칙에 관한 서류 1부

9-2.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

※ 영문제출가능서류는 영문, 국문서류를 함께 제출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258조제1항에 따라
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리인) 서명 또는 인

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